

봄바람 타고 황사 공습... 마스크 무장한 나들이객

포근한 날씨 공원 등 인파 몰려 기상청 "주말 이후 황사 벗어나"

광주·전남 지역에 주말 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꽃 관광 명소에 봄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지만 봄의 불청객 황사로 인해 나들이객 대부분은 마스크를 코까지 덮어쓴 모습이였다.

31일 찾은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 광주 지역 대표 봄꽃 명소로 불리는 이곳에는 비눗방울 체험과 버스킹 등 가볍게 즐길거리가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힐링 쉼터다.

이날 오후 운천저수지 일대는 봄꽃이 개화하고 처음 맞는 주말인 만큼 꽃이 만개하지 않았음에도 찾아온 봄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바깥에 나선 시민들은 따뜻하게 풀린 날씨에 활짝 핀 봄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거나 바닥에 돛자리를 깔고 여유를 즐겼다.

부모와 함께 꽃놀이 왔다는 황하영(31)씨는 "꽃구경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직접 나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며 "광주는 지금이 개화 시기이니 이때가 아니면 보기 힘들 거라는 생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전남 지역 낮 최고기온은 22도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와 서해상에 잔류하고 있는 황사가 유입되면서 공기질이 나빠져 대부분의

나들이객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였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주말 동안 광주지역 시간당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30 $\mu\text{g}/\text{m}^3$ 으로 '나쁨' 수준을 보였다.

한성희(31)씨는 "코로나19 이후 마스크를 써본 기억이 없는데 황사로 인해 공기질이 안 좋아 마스크를 다시 꺼내들었다"며 "공기는 탁해도 이렇게 활짝 핀 봄꽃을 보니 또다시 봄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운천저수지를 찾은 정혜원(33)씨는 "나오기 전 날씨를 확인하고 나왔는데 미세먼지가 심해 마스크를 썼다"며 "비가 많이 와 꽃이 지지 않았을까 걱정했지만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라 다행"이라고 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늘마당에도 봄 날씨를 맞아 피크닉을 즐기러 온 나들이객이 곳곳에 보였다.

정운주(28)씨는 "날씨가 풀리면서 꽃이 많이 폈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나왔다"며 "마스크를 착용해 목은 안 아픈데 뿌연 하늘에 사진이 예쁘게 안 찍혀 아쉽다"고 말했다.

윤설희(33)씨는 "미세먼지가 심해 마스크를 써도 눈이 아프고 목이 칼칼한 것 같다"며 "간만에 나왔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 아쉬운 마음도 든다"고 토로했다.

광주 대표 관광지인 패밀리랜드는 봄꽃 개화시기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방문객이 늘었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방문객 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

됐다. 패밀리랜드 관계자는 "벚꽃이 필 시기라서 그런지 지난해에 비해 방문객이 늘었다"며 "대부분 방문객이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지난해 대비 10%가량 방문객 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은 주말 이후 황사 영향에서 벗어나겠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주말까지 잔류황사가 영향을 미쳤으며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 내외를 유지하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2일 늦은 오후부터 광주·전남 지역에 5~1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상이기자·나다운·박찬·윤준명 수습기자



지리산 치즈랜드 찾은 상춘객
미세먼지가 잦아든 31일 구례 산동면 지리산 치즈랜드를 찾은 상춘객들이 노랗게 핀 수선화 꽃밭을 거닐고 있다. 김양배 기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 수용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

법원 “1억9435만원 지급하라”

법원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발부지 내 토지 수용 당시 감정평가가 타당하지 않다고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한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발부지 내 토지주 A씨가 광주시와 개발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시와 개발사업자가 함께 원고 A씨에 법원의 토지 감정 평가액과 수용재결 당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1억9435만 89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중앙근린공원 개발 특례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실

시 계획을 인가, 고시했다.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해 1월 사업지 내에 있는 A씨 소유의 임야 1만 3358㎡를 수용토록 재결했다. 당시 감정을 거쳐 책정된 손실보상금은 25억 5338만 1700원이었다.

그러나 A씨는 “수용재결 당시 감정은 해당 토지와 성질·활용도가 다른 토지들을 비교 표준지, 보정 거래 사례로 선정해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 감정 결과(해당 토지 손실보상금 27억4774만600원)는 모든 법령·규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토지 가치를 평가했다. 시와 개발사업자는 공동으로 법원 감정 결과와 수용 재결 당시 손실보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반면 시와 개발사업자 측은 “법원 감정이 해당 사업계획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의 거래가 아닌 사례를 비교사례

로 사용, 수용보상금 증액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수용재결 단계에서의 감정이 비교 표준지 선정 등 평가 결과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원 감정과의 차이는 감정인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차”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반드시 사업계획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거래 사례를 평가 선택으로 참작해야 하는 점은 아닌 점 △가격 편차가 크지 않은 거래 사례가 해당 토지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원 감정 결과가 더 타당하다고 봤다. 송민섭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